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10. 14.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9.

다. 상 정 일 자 :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0. 3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회계과장 이호경)

가. 제안이유

- 궁평종합관광지 조성사업(변경)
 - 궁평관광지 조성 및 유스호스텔 건립을 통하여 궁평리 지역을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함.
-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조성공사(변경)
 - 동탄호수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지역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동탄2(주22)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 동탄2신도시 이주주택지 및 상업시설 일대에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가칭)봉담 와우리 복합문화도서관 건립(변경)
 - 봉담 지역에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하여 독서문화 여건을 개선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유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수원고읍성 보호구역 토지매입
 - 수원고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및 장기적인 보존 대책 수립을 통한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
- 맑은물사업소 청사이전 사업
 - 현 맑은물사업소의 노후화에 따라 청사를 이전하여 상수도시설 관리기능을 복합화하는 등 시민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산목록(취득재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산표시			재산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부서
	구분	소재지	수량(면적)				
계	토지		172,456.7	36,006,028			
	건물		34,638	118,084,000			
	기타		-	-			
1	토지	궁평리 514-6 외 163필지	149,867	17,974,802	2023	궁평종합관광지 조성사업(변경)	관광진흥과
	건물	궁평리 514-6 외 163필지	12,752	52,024,000	2024		
	기타	-	-	-	-		
2	토지	송동 724-1 외 1필지	3,510.9	12,414,542	2019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조성공사(변경)	교통지도과
	건물	송동 724-1 외 1필지	14,298	34,338,000	2024		
	기타	-	-	-	-		
3	토지	동탄2 주22	1,074.8	1,267,189	2023	동탄2(주22)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교통지도과
	건물	-	-	-	-		
	기타	-	-	-	-		
4	토지	-	-	-	-	(가칭)봉담와우리 복합문화도서관 건립(변경)	도서관 정책과
	건물	봉담읍 와우리 217	4,200	19,900,000	2024		
	기타	-	-	-	-		
5	토지	기안동 산2-11 외 17필지	18,004	4,349,495	2027	수원고읍성 보호구역 토지매입	문화유산과
	건물	-	-	-	-		
	기타	-	-	-	-		
6	토지	-	-	-	-	맑은물사업소 청사이전 사업	맑은물 시설과
	건물	향남읍 화리현리 207	3,388	11,822,000	2025		
	기타	-	-	-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운정자)

○ 궁평종합관광지 조성사업(변경)

-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우리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건강한 지역경제 구축 및 서부권에 부족한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으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 건축 연면적 증가로 인한 인건비, 자재비 상승과 토지감정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크게 상승함에 따른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조성공사(변경)
 - 인근 도로변 불법주정차 문제와 호수공원 이용객(인근주민) 및 상업지구 일대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통행)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됨.
- 동탄2(주22)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 지역주민 및 상가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변 불법주정차 해소 및 교통(통행)여건 개선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됨.
- (가칭)봉담 와우리 복합문화도서관 건립(변경)
 - 인구증가에 따른 문화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증가한 지역주민들에게 풍부하고 밀접한 지식·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됨.
- 수원고읍성 보호구역 토지매입
 - 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및 장기적인 보존 대책 수립을 통한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효과가 기대되나
 - 토지의 향후 사용 가치를 고려하여 토지매입비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맑은물사업소 청사이전 사업
 - 사업소 청사 이전을 통한 효율적인 공공청사 조성으로 민원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의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향상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10. 14. 이은진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9.

다. 상 정 일 자 :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0. 3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은진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의 운영 방향에 맞추어 센터명을 개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 및 사업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3항)
- 센터 명칭 및 기능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운영자)

-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과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자구정정 포함)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10. 14. 이은진, 김영수, 배현경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9.

다. 상 정 일 자 :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0. 31.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은진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성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출한 서류상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안 제17조제2항)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용어의 구체화를 통하여 조례 해석을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수정동의 발의 - 배현경 의원

- 기존 위원의 신뢰보호를 위해 적용례를 두어 조례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부칙에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추가하여 수정

※ 수정대비표 별첨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위원의 해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제2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u></p>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10. 14. 이은진, 김영수, 배현경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9.

다. 상 정 일 자 :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0. 31.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이은진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성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출한 서류상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절차를 거쳐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 (안 제7조제2항)
-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사유 (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용어의 구체화를 통하여 조례 해석을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수정동의 발의 - 배현경 의원

- 기존 위원의 신뢰보호를 위해 적용례를 두어 조례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부칙에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추가하여 수정

※ 수정대비표 별첨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위원의 해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4호 · 제5호, 제2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u></p>

화성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10. 14.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9.

다. 상 정 일 자 :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0. 3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자치행정과장 박형일)

가. 제안이유

- 기존 「화성시마을자치센터」의 주민자치 지원 업무의 市 이관 및 위탁기간 만료(2022. 12. 31.)에 따라 공동체 지원 업무를 위한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신규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내용

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관리

- 1)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산 및 시설 관리
- 2)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시행

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 1)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 2)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
- 3) 마을지기 발굴 및 육성
- 4) 마을공동체 교육 및 홍보

다. 마을공동체 자원 관리

라.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운영 지원

마.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시설 개요

가. 소재지 : 화성시 봉담읍 상리중심상가길 28-18, 6층

나. 시설 : 사무실 ※ 회의실은 주민자치협력추진단과 공유

다. 조직 : 총7명(1센터장, 2팀)

○ 민간위탁기간

가. 협약일(2023. 1. 1.예정) ~ 2024.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가. 공개모집 후 「화성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

○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함

나.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마을 활동가 협력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가. 2023년 위탁금 : 664,739천원

※ 인건비 417,209천원, 운영비 91,530천원, 사업비 156,000천원 계상

※ 2023년 예산편성, 사업계획, 위탁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원일)

○ 화성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체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10. 14.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9.

다. 상 정 일 자 :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1. 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지원과장 김성현)

가. 제안이유

- 화성시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인 “햇살어린이집”의 재위탁기간(2021. 3. 1. ~ 2023. 2. 28.)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현황

(2022년 9월 기준)

시설명	교직원	시설규모	現 위탁기관 (위탁기간)				
햇살어린이집	18명 시설장 1 교 사 15 조리원 2	지상2층 (연면적 296평) 보육실 7개실, 다목적실, 교사실, 조리실, 옥외놀이터 등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3. 1. ~ 2023. 2. 28.)				
반 구성 현황							
	계	만 1세 4반	만 2세 2반	만 3세 1반	만 4세 2반	만 5세 1반	야간연장
정원	99	20	14	15	30	20	(15)
현원	72	13	14	12	18	15	(15)

○ 위탁내용

- 입소 영유아 보육 및 교육
- 입소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 보육과 관련된 부모 교육
-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 그 밖에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업무

○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2023.3.1. ~ 2028.2.28.)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위탁기간>)

○ 위탁방법

-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위탁 추진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원일)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의 사기를 증진하기 위한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10. 14.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9.

다. 상 정 일 자 :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1. 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인사과장 김창모)

가. 제안이유

- 현행 포상 조례를 개정하여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포상을 수여하여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희망 화성 건설에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혁신 문화를 조성하는 포상을 신설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포상의 대상 정의 변경(안 제2조)
- 포상의 종류에 화성공무원대상 추가(안 제4조)
- 부상 기준 재정립(안 제8조)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삭제(안 제9조 및 제13조)
- 포상 취소 시 환수기준에 화성공무원대상 추가(안 제14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원일)

-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일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 실시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10. 14.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9.

다. 상 정 일 자 :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1. 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세정1과장 민영섭)

가. 제안이유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3년 화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 : 151,914천원

(단위: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증 감 액
		연구원 요구액	부서 산정액	증 감	
출연금 (시비 100%)	129,445	151,914	151,914	-	22,469

※ 산출기초 : 전전년도(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265,949,395천원의 1만분 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원일)

-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10. 14.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9.

다. 상 정 일 자 :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1. 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민원봉사과장 한성택)

가. 제안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민원응대 및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이나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원일)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10. 14.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9.

다. 상 정 일 자 :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1. 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감사관 장병순)

가. 제안이유

- 「화성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갑질 피해신고, 조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조직문화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누구든지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음 (안 제3조)
-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화성시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음 (안 제4조)
- 갑질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필요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갑질 행위에 대해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음(안 제6조)
-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신분상 등의 불이익, 보복행위 등 보호조치를 마련하며, 신고자 외 협조자 등에게도 준용함 (안 제10조~제13조)
-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보호받지 못함(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원일)

-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우리시 조직문화를 건전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재단법인 화성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10. 14.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9.

다. 상 정 일 자 :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1. 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전략사업담당관 우정숙)

가.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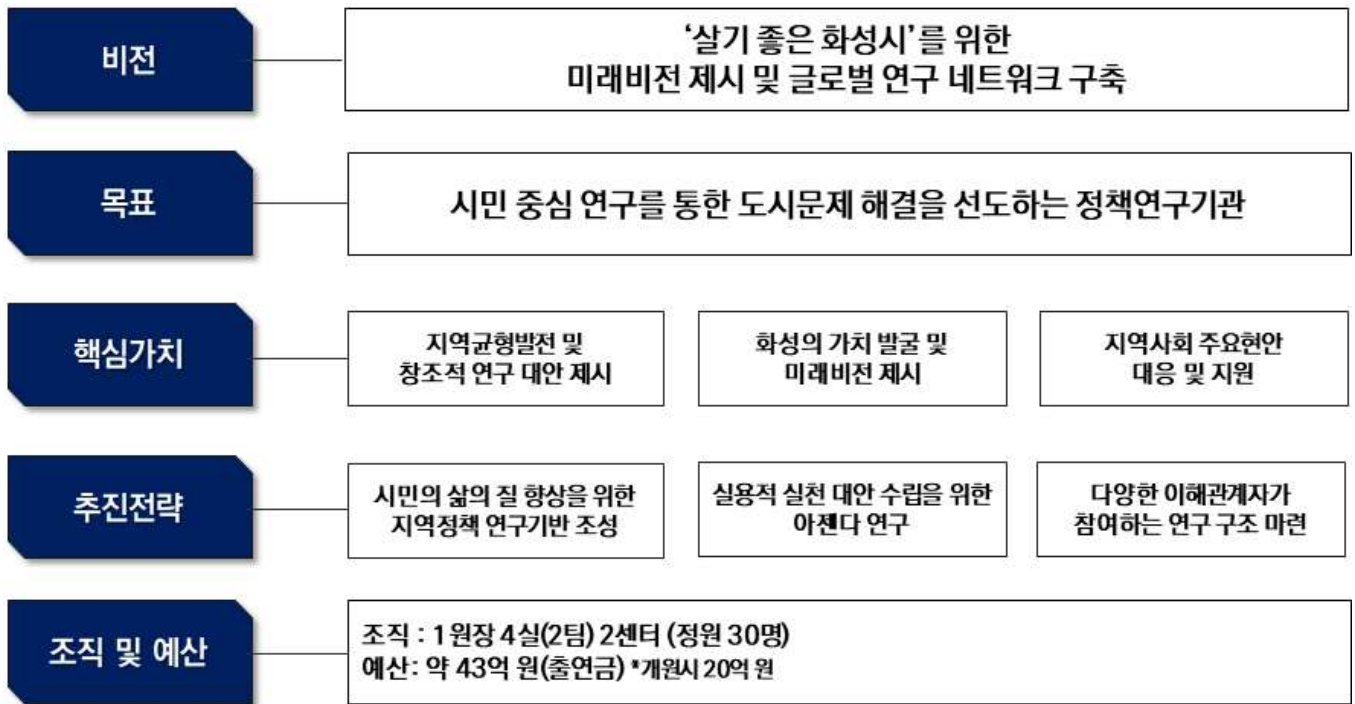
- (재)화성시정연구원을 설립하여 정부, 경기도 등 상위기관 주요 정책 및 상위계획 수립·대응과 국내·외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우리 시 미래비전 및 중장기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기본재산 및 운영 경비를 출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요사업

1) 비전 및 목표

- (비전) ‘살기 좋은 화성시’ 를 위한 미래비전 제시 및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
- (목표) 시민 중심 연구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 (추진전략)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정책 연구기반 조성, 실용적 실천 대안 수립을 위한 아젠다 연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연구 구조 마련



2) 주요사업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총괄	세부		
연구과제사업	전략연구과제	시정 미래비전 또는 주요 핵심사업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소요기간 : 6~12개월)	부서당 1건 이상
	정책연구과제	주요 정책개발 또는 동향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제시 및 시정 관련 정책 지원 연구(소요기간 : 3~6개월)	박사 1인당 1건 이상
	현안분석	당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소요기간 : 1~3개월)	박사 1인당 2건 이상
연구부대사업		연구과제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부대사업 - 정책 현안에 대한 정책포럼 운영, 대외협력교류 추진 등	
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부대사업 지원사업 - 보고서 및 정보자료관리, 홍보콘텐츠 개발 및 관리 등	
연구기반사업	기획·평가	연구원 연구사업계획 수립, 연구원 관련 효율적 운영방안, 성과관리 등의 사업 관련 활동	
	연구사업인력운용	효율적인 연구원 운영을 위한 계약직 연구인력 운영 등을 위한 제도 마련(초빙연구위원 위촉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원일)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수요자 중심 정책연구로 도시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과제 도출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충실한 연구를 수행하고 합리적·전문적 정책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 행정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력적 소통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10. 14.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9.

다. 상 정 일 자 :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1. 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전략사업담당관 우정숙)

가.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 및 절차 등을 법의 취지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의 근거 조항 명시 및 관련 내용 개정(안 제4조)
-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의 근거 조항 및 절차 명시(안 제5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완 주기 개정(안 제6조)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의 내용 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원일)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10. 14.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9.

다. 상 정 일 자 :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1. 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정책기획과장 김진관)

가. 제안이유

-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 대한 사무위임의 근거 마련으로 위임사무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주민접점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 위임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및 정비
(농업정책과, 아동보육과, 건축관리과)
-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부서 변경사항 개정(건축허가과, 건축관리과)
-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위임사항이 혼재된 위임규정 분리(농업정책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원일)

-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위임사무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주민접점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10. 14.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0. 19.

다. 상 정 일 자 :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1. 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예산법무과장 이택구)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추가(안 제1조)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위임조항 신설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 (기존)실행계획 ⇨ (변경)계획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안 제4조제1호)
 - 적극행정위원회 기능 관련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제3항)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3항 개정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원일)

-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